

#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452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4월 19일  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안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중 현행 조례 시행 당시 축조 중인 신재생에너지 영구시설물 뿐만 아니라 기축조된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도 의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여 조례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.

## 2. 주요 골자

- 안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기축조한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도 의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함.

## 3. 참고사항 : 생략

#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부칙 제2조(경과조치) 중 “축조 중인”을 “축조하였거나 축조 중인”으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5조의2(의견청취) 시장은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른 사용 및 대부요율을 산정 공고하는 경우 <u>서울특별시</u> <u>의회</u>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사용 및 대부요율을 인하·동결하거나 전년도(해당 대부요율이 적용되는 그 해의 직전 년도를 말한다) 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로 인상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25조의2(의견청취)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</u> <u>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</u>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	<p>제25조의2(의견청취)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〈신 설〉</p>	<p>제25의3(의회동의) ① 「<u>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</u>」 제26조 제2항에 따라 <u>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<u>시장 명의를 철거비용부담</u> <u>확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거나 철거비용을 공탁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25의3(의회동의)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〈신 설〉</p>	<p>부칙</p>	<p>부칙</p>
	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</p>	<p>제1조(시행일) (개정안과 같음)</p>

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(영구시설물  
축조 사전 승인에 관한 경과  
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 
중전의 조례에 의하여 축조  
중인 영구시설물은 이 조례  
제25조의3에 따라 승인  
받은 것으로 본다.

제2조(경과조치) (영구시설물  
축조 사전 승인에 관한 경과  
조치) -----  
----- 축조  
하였거나 축조 중인 -----  
-----  
-----.

##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2 본문 중 “서울특별시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의3(의회동의) ①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 명의의 철거비용부담확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거나 철거비용을 공탁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(영구시설물 축조 사전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축조하였거나 축조 중인 영구시설물은 이 조례 제25조의3에 따라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5조의2(의견청취) 시장은 제25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사용 및 대부요율을 산정 공고하는 경우 <u>서울특별시</u> <u>의회</u>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사용 및 대부요율을 인하·동결하거나 전년도(해당 대부요율이 적용되는 그 해의 직전 년도를 말한다) 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로 인상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25조의2(의견청취)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</u> <u>의회</u>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----- ----- . ----- ----- ----- ----- .</p>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	<p>제25의3(의회동의) ① 「<u>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</u>」 제26조제2항에 따라 <u>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<u>시장</u> 명의의 철거비용 부담확약서를 <u>재산관리관</u>에게 제출하거나 철거비용을 공탁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.</p>